

12 대물배상의 기준

▣ 대물배상의 한도

대물사고로 지급되는 보험금은 매 사고에 대하여 1사고당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하며, 비용은 보험가입금액에 불구하고 보상한다.

- 지급보험금 = 법률상배상책임액(지연배상금포함) + 비용
- 법률상배상책임액은 약관의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하지만 소송이 제기되었을 때는 법원의 확정판결금을 말한다.
- 비용 : 손해방지및 경감비용, 권리보전 및 행사비용, 긴급조치비용 , 소송비용

※ 소송이 제기되었을 때에는 보험회사에 빨리 알려 소장과 함께 소송대리허가신청서, 위임장에 날인해 주어야 하며, 이를 게을리하여 손해액이 확대되는 경우에는 보험회사에서 확대된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함에 유의하여야 한다.

▣ 대물배상의 기준 및 해설

대분류	소분류	해설 및 기준
직접 손해	수리비용	원상회복이 가능한 경우 사고 직전의 상태로 원상회복하는데 소요되는 필요타당한 비용으로서 실제 수리비용을 인정하며, 수리시 열처리 도장을 한 경우 차령에 관계없이 열처리 도장료 전액을 인정한다. 또한 수리비 및 열처리 도장료의 합계액은 피해물의 사고 직전 가액의 120%를 한도로 한다.
	교환가액	피해물이 수리비용이 피해물의 사고 직전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와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피해자가 피해물가액 상당액을 대체하는 경우에는 사고 직전의 피해물과 동종의 대용품 가액과 이를 교환하는데 소요되는 필요 타당한 비용을 보상한다. 단, 피해물은 자동차일 경우 또는 건물, 가재, 집기비품 및 상품의 경우이거나 기타 유실수 등 다양하므로 각각에 대한 보상기법 또한 다양하고 복잡하게 이루어 질 수 있다.
	대체비용	피해물의 대체에 따르는 등록, 등기 등의 비용으로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기타 인지 및 증지대, 엔진구조변경비용, 신차인수비용, 교통안전협회비, 검사수수료 등은 대체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으로 인정하나, 자동차세, 각종채권매입비용, 보험료는 인정하지 않는다.
	격락손해 = 감가손해	파손된 자동차 등을 수리한 후의 시중시세액(중고차량 가격)이 하락하게 되는 경우 그 하락에 대한 손실을 격락가 손실이라 하며, 원칙적으로 이러한 격락가손실액은 배상되는 성질의 손해에 속하나 그 손해를 입증하기

		<p>가 여의치 못한 경우가 많다.</p> <p>즉, 감정적으로나 정서적으로 하락되었다고 판단되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하락으로 인한 실제손해가 입증되어야 하기 때문에 같은 차종과 같은 년식 및 같은 상태의 다른 차량의 실제 거래 시세액을 확인하여 비교하는 자료를 제출하는 등 입증방법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p> <p>자동차보험(플러스보험 포함)의 보험금지급기준에서는 ‘자동차시세하락손해’라 하여 출고 후 1년 이내인 차량으로 수리비가 사고 직전 자동차가액의 30%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수리비용의 10%를 인정하고 있다.</p>
간접 손해	대차료	<p>비사업용 자동차 또는 비사업용 건설기계가 파손되어 가동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에 다른 자동차(또는 건설기계)를 대신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에 소요되는 필요 타당한 비용을 지급한다.</p>
	휴차료	<p>사업용 자동차(건설기계 포함) 등의 피해물건이 수리에 임하는 동안에 발생한 영업손해를 배상한다. 1일의 영업수익에서 영업에 필요한 제반 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인정한다. 자동차보험(플러스보험 포함)에서도 휴차료는 인정되며 다만 그 인정기간을 수리가 가능 한 경우 30일, 불가능한 경우 10일로 한정하여 인정하고 있다.</p> <p>※ 산식 : 휴차료 = (1일영업수입 - 운행경비) * 휴차기간</p>
	영업손실	<p>사고로 사업장 혹은 그 시설물이 파손되어 복구하는 동안 휴업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을 말하며 손실에 대한 인정은 해당 사업장에 대한 세법상 제반 소득입증자료를 기준으로 하되 여의치 못할 경우 직종별 통계소득 등을 참고하여 인정한다.</p> <p>자동차보험(플러스보험 포함)에서도 영업손실을 인정하고 있으나 인정기간을 30일까지로 한정하고 있고 세법상 입증이 곤란한 소득에 대한 인정도 통계소득이 아닌 소위 '일용근로자임금'을 적용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다면 과실해당액을 공제한다.</p>